

제314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2024. 9. 11.(수)



행정복지위원회

목 차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1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치곤장군 호국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대구광역시 달성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5. 2024년도 (재)달성교육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	9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13.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5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장애인재활작업장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30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3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과정

- 의안번호: 제2535호
- 발 의 일: 2024년 8월 23일
- 발 의 자: 서도원 의원 등 3인
- 회부일자: 2024년 8월 26일

2. 제안사유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에 따라 달성군 소재의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호 및 처우개선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달성군 관내 돌봄서비스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제2조)
- 군수 및 장기요양기관 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세부시행계획 및 처우개선 사업 규정(안 제8조~제9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5.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에 따라 달성군 소재의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호 및 처우개선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달성군 관내 돌봄서비스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명시되어 있으나,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게 되어 있어 관내 조례 제정에 앞서 중앙부처의 추진할 계획 및 사업(즉 처우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업무상 질환 예방 물품 보급, 유급휴가 시범운영, 승급제, 해외인력, 지원센터 기능 확대 등)과는 중복되지 않는 사업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장기요양요원 중 상당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필요하다고 추계한 비율(시설 필요인력: 2.4:1 / 재가 필요인력: 1.52:1) 대비 현 달성군 관내 인력 배치기준은(시설 필요인력: 1.9:1 / 재가 필요인력: 1.44:1) 안정적인 것으로 볼 수 있어, 달성군의 경우 인력충원보다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지원이 선제되는 것이 중요하며,
- 광역 조례를 따라 대상을 정의하고 조문내용 상 세부시행계획 사항을 검토하였을 때, 향후 상위법령과의 중복성을 배제하기 위해 고려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6, 질의 답변 및 토론요지 : 특이사항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치곤장군 호국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과정

- 의안번호: 제2536호
- 발 의 일: 2024년 8월 23일
- 발 의 자: 서도원 의원 등 3인
- 회부일자: 2024년 8월 26일

2. 제안사유

- 공유재산의 위탁계약 해지 시 수탁자의 손실보상 제한 사유를 수탁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는 등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취소 및 해지에 따른 보상제한 규정을 명확히 하자고 함.

3. 주요내용

- 손해배상의 규정(안 제15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5.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조례안 시행 목적은 공유재산의 위탁계약 해지 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 규정을 명확히 하여,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의 경우 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 현행 조례는 위탁계약 해지 시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해석의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여 계약 당사자 간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달성군의 공유재산 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6, 질의 답변 및 토론요지 : 특이사항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달성군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과정

- 의안번호: 제2534호
- 발 의 일: 2024년 8월 23일
- 발 의 자: 서도원 의원 등 3인
- 회부일자: 2024년 8월 26일

2. 제안사유

-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 소속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지원사항을 확대하여 새마을운동의 원활한 활동을 도모하고, 소속 회원들의 사기진작에 이바지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지원사항 확대(안 제3조)
- 지원 근거 현행화(안 제5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5.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조례안 시행 목적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 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하기 위함입니다.
- 2013년 제정되어 현재까지 본 조례를 근거로 하여 관내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되고 있으며, 이번 일부개정의 이유는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지원사항을 확대하고자 함이며,
- 새마을지도자들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뿐만 아닌 「긴급복지지원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법률에서 긴급대상자 신고자, 주민참여감독자 등 다양한 역할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상 정의된 “자원봉사”의 개념에 새마을사업이 부합되는 점과 「대구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상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보험가입을 가능하게 한 규정이 있는 점을 미루어, 이번 개정조례안에서 새마을지도자들이 봉사활동의 개념인 새마을사업을 위한 피복 구입 및 보험가입의 근거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6, 질의 답변 및 토론요지 : 특이사항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달성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과정

- 의안번호: 제2533호
- 발 의 일: 2024년 8월 23일
- 발 의 자: 전홍배 의원 등 3인
- 회부일자: 2024년 8월 26일

2. 제안사유

- 관내 외국인 관련 지원대상 및 범위를 확대하여 “달성군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 사례분석 및 현안 발굴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반영하고, 어려운 용어와 복잡한 문장 등을 간결하게 표현하여 조문의 내용을 군민들이 알기 쉽도록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지원대상 확대(안 제5조)
- 지원의 범위 확대(안 제6조)
- 수당지급 대상 명확화(안 제12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출입국관리법」

5.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조례안 시행 목적은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의 향상 도모를 통한 지역사회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2007년 제정되어 현재까지 본 조례를 근거로 관내 거주외국인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일부개정의 이유는 조례 목적에 부합하도록 근거 규정의 범위를 외국인 가정까지 확대하고,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단순 정보습득이 아닌 활용을 위한 효율화·고도화 사업을 추가하여 지원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 타 조례 개정에 따른 일부개정을 제외하면 2007년 이후 개정된 바가 없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 및 복잡한 문장 등을 간결하게 표현한바, 본 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6. 질의 답변 및 토론요지 : 특이사항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2024년도 (재)달성교육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 심사보고서

1. 심사과정

- 의안번호: 제2542호
- 제출일: 2024년 8월 23일
- 제출자: 달성군수
- 회부일자: 2024년 8월 26일

2. 제안사유

- 2024년도 군 금고출연 협력사업비로 인한 출연금 변경액 3억1천2백만 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달성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 군 금고 출연 대외사업비 농협 3억 원, 대구은행 1천2백만 원, 총 3억1천2백만원을 달성교육재단에 출연

(단위: 백만 원)

출연연도	출 연 금 액			비고
	계	농협은행	대구은행	
합 계	1,397	1,350	47	
2022년	512	500	12	
2023년	312	300	12	
2024년	312	300	12	▷ 협력사업비 세입조치 : 6.30.(징수과)
2025년	261	250	11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5.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계획의 목적은 군민 맞춤형 교육 정책 수립으로 교육 분야 주민 만족도 향상 및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 이를 위해 군 금고 출연 대외사업비의 농협 3억 원, 대구은행 1천2백만 원을 합하여 총 3억1천2백만원을 달성교육재단에 출연하고자 심의요구한 바 있습니다.
- 이는, 장학사업과 교육지원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재단의 기본 재산을 적립하여 이자수익을 얻고자 함입니다.
- (재)달성교육재단은 민선8기 목표인 아이키우기 좋은 교육도시 조성 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맞춤형교육을 위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출연금 변경 계획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6, 질의 답변 및 토론요지 : 특이사항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과정

- 의안번호: 제2543호
- 제출일: 2024년 8월 23일
- 제출자: 달성군수
- 회부일자: 2024년 8월 26일

2. 제안사유

-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중앙기관 사업지침 반영

3. 주요내용

- 위탁운영 기간 변경(안 제6조)
- 실무위원회 운영주체 변경(안 제12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5.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사업 지침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 제6조(위탁운영)의 경우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3조(위탁계약의 내용)과 관련하여 2021년 9월 24일 일부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위탁계약기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 현 조례 제12조(실무위원회 설치 등)에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통합지원체계 실무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여성가족부에서 발간한 『2024년 청소년사업 안내』에 따르면, 2024년도에는 2023년과 달리 운영주체를 “시·도 및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로 명시하고 있으며, 실무위원회 등과 같은 청소년안전망 운영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 반영 및 중앙부처 사업지침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6, 질의 답변 및 토론요지 : 특이사항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과정

- 의안번호: 제2544호
- 제 출 일: 2024년 8월 23일
- 제 출 자: 달성군수
- 회부일자: 2024년 8월 26일

2. 제안사유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 장기재직휴가를 확대하여 저연차 공무원의 근무 의욕을 고취시키고 아이키우기 좋은 조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자녀보육휴가를 신설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시간외근무의 연가 전환 규정 신설(안 제13조의2)
-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대상 및 일수 확대(안 제14조)
- 장기재직·경조사휴가 확대 및 자녀 보육휴가 신설(안 제15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5.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공무원의 사기 진작 등 후생 복지제도의 향상을 위한 특별휴가의 확대를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맞춤형 교육도시로서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함입니다.
- 제14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의 경우 영의 단서조항이 2023년 7월 18일 일부개정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 현행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20일,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30일의 휴가를 허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를 10일 신설하였습니다.
-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 반영 및 공무원들에 대한 특별휴가 확대에 최근 대두되고 있는 공직사회 이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6, 질의 답변 및 토론요지 : 특이사항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과정

- 의안번호: 제2545호
- 제출일: 2024년 8월 23일
- 제출자: 달성군수
- 회부일자: 2024년 8월 26일

2. 제안사유

- 실비 신청 시 사업계획서 및 정관 등 타 구·군에 비해 많은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단체에 부담을 주는 점과 해당서류가 실비 지원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증빙서류 간소화를 통한 자율방범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지원절차 상 제출해야하는 증빙서류를 간소화(안 제5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5.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보다 원활하게 수행하고자 함입니다.
- 본 조례는 2023년 제정되어 자율방범대에 대한 자체 정의를 규정하고 관련 지원 내용·절차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실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실비 신청 시 대구 타 지자체에 비해 제5조(지원절차)상의 증빙서류가 많아, 단체에 부담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에 실비 지원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사항을 삭제하여 자율방범활동 활성화를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6, 질의 답변 및 토론요지 : 특이사항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과정

- 의안번호: 제2546호
- 제출일: 2024년 8월 23일
- 제출자: 달성군수
- 회부일자: 2024년 8월 26일

2. 제안사유

- 대구 국가산업단지 2단계 준공(24. 12. 예정)과 관련하여, 지적 정리를 위해 사업지구 내 행정구역을 지구계획에 맞도록 경계선 변경을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구지면 법정리 간 경계변경

현재의 행정구역 명칭	필지 수	이동면적(m ²)	편입된 지역	비고
구지면 유산리	180	104,830	구지면 목단리	
구지면 대암리	16	7,351		
구지면 유산리	35	37,784	구지면 대암리	
구지면 목단리	70	89,603		
구지면 내 리	2	1,828		
구지면 유산리	78	83,081	구지면 내 리	
구지면 대암리	57	74,592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5.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구지면 법정리 간 경계를 변경하고자 함이며, ① 유산리와 대암리 지역 196필지를 목단리 지역에 편입, ② 유산리, 목단리, 내리 지역 107필지를 대암리 지역에 편입, ③ 유산리, 대암리 지역 135필지를 내리 지역에 편입하고자 함입니다.
- 이는 대구 국가산업단지 2단계 준공과 관련, 사업지구 내 행정구역을 지구계획에 맞도록 경계선 변경을 하기 위한것으로 조례의 일부개정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6, 질의 답변 및 토론요지 : 특이사항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과정

- 의안번호: 제2547호
- 제출일: 2024년 8월 23일
- 제출자: 달성군수
- 회부일자: 2024년 8월 26일

2. 제안사유

- 행정리 신설(공동주택 입주)

읍·면	행정리	공동주택명(세대수)	지 번	입주예정
화원읍	명곡8리	화원동화아이위시(568) 화원동화아이위시오피스텔(105)	명곡리 230-8	'24. 10.

3. 주요내용

- 리·반 조정 : 1리 증(333리 ⇨ 334리), 19반 증(2,871반 ⇨ 2,890반)

구분	읍·면	기존			개정			증감		이장 정수	비고
		행정리	반	세대수 (인구수)	행정리	반	세대수 (인구수)	리	반		
신설	화원읍	-	-	-	명곡8리 (화원동화아이위시)	19	673	1	19	1	'24.10. 입주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5.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화원읍 신설 아파트 준공 및 입주에 따른 행정리·반을 신설하여 이장 정수 및 반 수를 조정하고 주민생활의 편리성과 행정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6, 질의 답변 및 토론요지 : 특이사항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과정

- 의안번호: 제2548호
- 제출일: 2024년 8월 23일
- 제출자: 달성군수
- 회부일자: 2024년 8월 26일

2. 제안사유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한 재산세의 추가 경감률을 정하고, 변경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신설(안 제12조의2)
- 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신설(안 제12조의3)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13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5.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명시된 조례위임조문에 대한 재산세의 추가 경감률을 정하고, 변경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 사회복지시설이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를 50% 추가 경감하는 조문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감면 할 경우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100분의 50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있어, 이번 개정문에서 재산세의 추가 경감률을 100분의 50으로 정하였습니다.
- 대구국가산업단지 일부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어 특구내에서 창업하거나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재산세를 50% 추가경감하는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의2제1항 제2호 및 제2항제2호에 따라 이번 개정문에서 재산세 추가 경감률을 100분의 50으로 정하였습니다.
- 또한 상위법 개정에 따라 자동이체 방식을 자동납부 방식으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 이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중 조례위임사항에 대해 반영하고자 한바,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6. 질의 답변 및 토론요지 : 특이사항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과정

- 의안번호: 제2549호
- 제출일: 2024년 8월 23일
- 제출자: 달성군수
- 회부일자: 2024년 8월 26일

2. 제안사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개정(2023.8.22.) 및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법령 위반 자치법규 정비 추진계획」[회계제도과-1802(2023.11.8.)]시행에 따라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일부 규정을 개정하여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규정을 구체화 및 명확화하여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행정안전부 「공유재산법령 위반 자치법규 정비 추진계획」에 따른 정비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생략 규정 정비(안 제5조제2항제5호)
 - 공유재산 사용기간이 부적절한 규정 정비(안 제17조)

-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 대부료 분할납부 기준 완화(안 제35조제2항)
 - 변상금 분할납부 기준 완화 및 세분화(안 제63조제1항)
- 조문의 기준·내용·범위의 구체화 및 명확화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생략 규정 명확화(안 제5조제2항제2호)
 - “군”의 정의 규정(안 제 20조의2제1항제1호)
 - 수의 대부·사용허가할 수 있는 범위 규정 신설(안 제25조의2)
 - 대부료 요율 적용 대상 정비(안 제28조제5항제1호, 같은 항 제6호)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대구광역시 친환경우수농축특산물 등 명품인증 및 지원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5.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2023. 8. 22.)됨에 따라 사용료 등의 변동사항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 분할납부 기준을 기존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분할납부 횟수를 연 6회에서 연12회로 개정하여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 이번 개정사항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반영과 더불어 모호한 규정들을 구체화하고 명확화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6, 질의 답변 및 토론요지 : 특이사항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1. 심사과정

- 의안번호: 제2550호
- 제 출 일: 2024년 8월 23일
- 제 출 자: 달성군수
- 회부일자: 2024년 8월 26일

2. 제안사유

- 달성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 건
 - 온천원보호지구 등 규제로 미개발된 논공읍 상리 일원에 관광휴양 거점을 조성하여 기존 관광자원과 연계, 지역균형발전 및 고용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
- 논공 상·하리 창작캠핑장 조성 변경 건
 - 「달성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과 연계, 달성을 대표하는 관광휴양 거점으로 개발하고자 함.
- 서재 생활문화센터 건립 건
 - 다사 서재지역의 젊은 가족세대가 증가하여 문화복지 시설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주민들을 위한 문화·복지·교육 서비스를 공급하여 지역 주민들의 문화 향유기회를 확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 마천산 산림욕장 유아숲체험원 조성부지 매입 건

- 산림교육시설 수요에 비해 인프라가 부족한 다사권역에 다양한 산림 휴양 활동지를 제공하고 유아의 심신안정, 정서함양을 고양하기 위함입니다.

3. 주요내용

○ 달성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 건

- 위 치: 논공읍 상리 35번지 일원 107필지
- 주요시설: 농업 전시관 및 학습관, 농산물 종합판매장, 대중골프장 및 클럽 하우스
- 총사업비: 430억 원
-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
 - 2023. 05. : 사업추진계획 협의
 - 2023. 12. :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완료
 - 2024. 03. : 지방재정투자심사,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 2025. 04. :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구지정 고시(예정)
 - 2025. 06. : 실시설계 및 개발계획 승인 신청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예정)
 - 2027. 01. : 개발계획 승인 고시(예정)
 - 2027. 03. : 착공(예정)
 - 2028. 06. : 준공(예정)

○ 논공 상·하리 창작캠핑장 조성 변경 건

- 위 치: 논공읍 하리 565번지 일원 5필지 및 건물 2동
- 변경사항: 기존계획의 산림휴양시설 제외(부지면적 158,121㎡, 총사업비 6억원 감소)
- 총사업비: 100억 원
-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
 - 2023. 02. :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완료
 - 2023. 08. : 2023년 제3차 공유재산심의회 의결
 - 2023. 09. : 군 지방재정투자심사
 - 2023. 11. : 부지매입 완료
 - 2024. 08. : 2024년 제4차 공유재산심의회 변경심의 의결
 - 2026. : 인허가 절차 및 실시설계(예정)
 - 2027. : 공사 착공 및 준공(예정)

○ 서재 생활문화센터 건립

- 위 치: 다사읍 서재리 531번지 외1필지 및 건물 1동, 532번지 일원 신축 건물 1동
- 주요시설: 지상 6층, 지하 2층 규모 공동육아나눔터, 체육센터, 문화센터, 도서관, 지하주차당 등.
- 총사업비: 404억 원
-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
 - 2024. 06. :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완료
 - 2024. 07. : 사업계획 수립
 - 2024. 08.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완료

- 2024. 09. : 부지매입(예정)
- 2024. 12. : 도서관리계획 변경(공공청사, 문화시설) (예정)
- 2026. 12. :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예정)
- 2027. 01. : 착공(예정)
- 2028. 12. : 준공(예정)

○ 마천산 산림욕장 유아숲체험원 조성 부지 매입

- 위 치: 다사읍 이천리 산39번지
- 총 면 적: 87,669㎡ 중 26,500㎡
- 부지매입비: 3억 원
-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
 - 2024. 01. : 마천산 산림욕장 보완계획 수립
 - 2024. 04. :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 2024. 06. : 마천산 산림욕장 내 유아숲체험원 조성계획 수립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5. 전문위원 검토의견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2제1항 에 의거 2024년도 제3차 수시 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달성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 건은 온천원보호지구 등 규제로 미개발된 논공읍 상리 일원에 관광휴양 거점을 조성하기 위함이며,
 - 논공 상·하리 창작캠핑장 조성 변경 건은 「달성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과 연계, 달성을 대표하는 관광휴양거점으로 개발하기 위함이고,
 - 서재 생활문화센터 건립 건은 다사 서재지역의 젊은 가족세대가 증가하여 문화복지 시설 수요가 증대함에 따라, 주민들을 위한 문화.복지. 교육서비스를 공급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며,
 - 마천산 산림욕장 유아숲체험원 조성부지 매입 건은 산림교육시설 수요에 비해 인프라가 부족한 다사권역에 다양한 산림 휴양 활동지를 제공하고 유아의 심신안정, 정서함양을 고양하기 위함입니다.
- 이상 4건의 사업은 기존의 관광자원들과 연계하거나,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여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서 2024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6, 질의 답변 및 토론요지 : 특이사항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장애인재활작업장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1. 심사과정

- 의안번호: 제2551호
- 제 출 일: 2024년 8월 23일
- 제 출 자: 달성군수
- 회부일자: 2024년 8월 26일

2. 제안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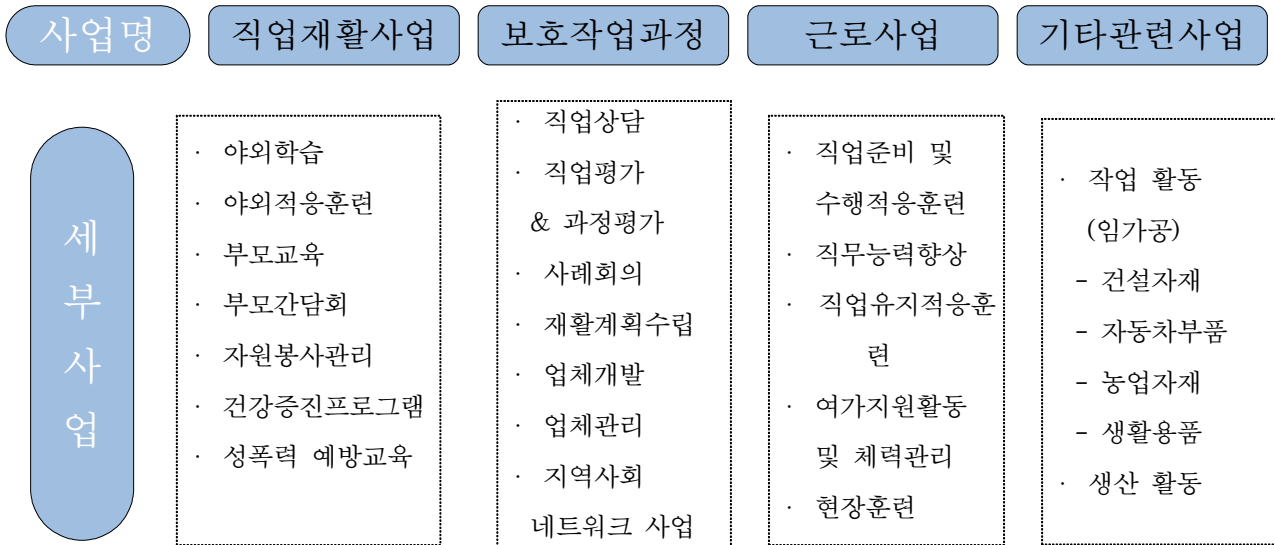
- 달성군다사장애인재활작업장의 운영 및 관리를 민간위탁중인 현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동의를 의회에 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탁대상 현황

시 설 명	소 재 지	시설규모	종사자수	비고
달성군다사장애인 재활작업장	다사읍 세천로10길 24-4	485.7㎡	4	

나. 위탁대상 사무의 범위 및 내용



다. 조직 및 구성

구 분	계	시설장	직업훈련교사	사무·회계
인 원	4	1	2	1

라. 위탁기간: 5년(2024.12.01. ~ 2029.11.30.)

마. 수탁기관 선정방식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평가

4. 민간위탁 재계약 경위

○ 2024. 8. 6. : 민간위탁 재계약 신청 접수

※ 신청기관 :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 2024. 8. 13.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재계약 적정 판단)

※ 심의 결과(평균 70점 이상 시 적격, 최고·최저 제외 평균)

-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 총점 370점, 평균 92.5점 재계약 의결

○ 향후일정

- 2024. 9. : 의회 동의

- 2024. 11. : 협약체결(위탁기간 : 2024. 12. 1. ~ 2029.11.30.)

- 2024. 11 : 공보 게재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사회복지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5.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대구광역시 달성군다사장애인재활작업장 위탁기간(2019. 12. 1. ~ 2024. 11. 30.)이 만료됨에 따라, 현 수탁기관인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과 위탁운영 재계약을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 달성군 다사장애인재활작업장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작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로서 장애인들의 ①직업재활사업, ②보호작업과정, ③근로사업, ④야외 학습 및 부모교육과 같은 기타관련사업을 맡고 있는 곳입니다.
-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은 2014년 처음 수탁기간으로 선정된 이후, 총 10년간 2회 재계약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 위탁기간이 만료 도래(2024. 11. 30.)함에 따라 현 수탁기관인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이 재계약 의사 표시를 해 오음에 따라,
- 현 수탁기관을 달성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재계약 적정성 여부를 판단한 결과, 92.5점(평균 70점 이상이면 재계약 가능)으로 적격으로 의결되었고, 기존 네트워크를 활용한 안정적인 운영 및 달성군다사장애인재활작업장이 사회복지서비스 성격의 행정재산임을 고려할때에, 민간의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위탁운영 재계약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6. 질의 답변 및 토론요지 : 특이사항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1. 심사과정

- 의안번호: 제2552호
- 제출일: 2024년 8월 23일
- 제출자: 달성군수
- 회부일자: 2024년 8월 26일

2. 제안사유

- 달성군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및 관리를 민간 위탁중인 현 위탁기관의 위탁기관 만료로 인해 공개모집을 통한 재 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나.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필요성

1) 추진 근거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설치·운영)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운영의 위탁)
-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설치·운영)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운영 업무의 위탁)

○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2) 추진 필요성

○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급식관리가 취약한 어린이·사회복지시설
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영양관리 지원

○ 어린이·사회복지시설 급식소의 안전한 급식 환경을 위한 위생관
리,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자료 개발을 통하여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대상자의 급식 위생 수준 향상

다. 위탁대상 현황

시 설 명	소 재 지	시 설 규 모	종사자수	비 고
달성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대구광역시 북구 영송로 47, 대구과학대학교 창업보육센터 107호	186.8㎡ (사무실)	15	-

라. 수탁기관 : 대구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

마. 위탁대상 사무의 범위 및 내용

○ 달성군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

- 100인 미만 어린이급식시설 및 50인 미만 영양사가 근무하지 않는
사회복지시설급식소에 대한 등록 및 위생 관리 등
- 교육자료,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위생 및 영양관리)
- 급식시설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 계획 수립 및 운영
- 식단·레시피 개발 및 정보 제공
- 어린이·사회복지 급식소 순회방문 및 현장지도·상담

바. 위탁기간 : 3년(2025. 1. 1. ~ 2027. 12. 31.)

사. 소요예산 및 세부항목: 연 735백만원 정도

(2024년 기준, 단위 : 천원)

구분	계	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유형자산	인건비
2024년도	735,000	198,292	16,960	12,000	8,000	499,748

아. 수탁기관 선정방식

1) 접수방법 : 공개모집

2) 선정절차

- 공고 ⇨ 접수 ⇨ 심의위원회 구성 ⇨ 심의위원회 심의 ⇨ 이의 신청·접수 ⇨ 수탁자 선정 ⇨ 협약체결

자.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별도 첨부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서면심의 결과보고 참고)

차. 성과평가 결과

- 별도 첨부

※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15조제1항에 의거 식약처 및 자체평가로 평가 같음

카. 향후일정

- 2024. 9. : 군의회 동의·의결
- 2024. 9. ~ 10. : 수탁기관 공개모집
- 2024. 10. ~ 11. : 수탁기관 선정 심의
- 2024. 11. : 위·수탁 협약체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 성과평가 결과 및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서면심의 결과 보고

5.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 지원센터의 위탁기간(2022. 1. 1. ~ 2024. 12. 31.)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의회에 연고자 함입니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급식관리가 취약한 어린이·사회복지시설 급식소에 체계적인 위생과 영양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안전한 급식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자료 개발등을 통하여 어린이, 노인, 장애인등의 대상자에 대한 급식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맡고 있는 곳입니다.
- 2013년 공모를 통해 처음 대구과학대학교산학협력단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한 이후, 9년간 총 3회에 동일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통해 추진된 바 있으며 현 위탁기간이 만료된 이후 공개모집을 계획중입니다.
- 달성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민간위탁 적정성 여부를 ①다른 사무방식, ②서비스 공급 공공성 및 안정성, ③경제적 효율성, ④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활용 가능성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해본 결과, 민간위탁이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전문인력을 통한 안정적인 업무 추진, 기타 부대시설 활용을 통한 경제적 효율성 증대등을 비추어 볼때에 본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 재위탁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6, 질의 답변 및 토론요지 : 특이사항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